

## 중국 저작권법 3차 개정에 관한 소고

손한기\*

### I. 서론

### II. 중국 저작권법의 변천

- 중국 저작권법의 체계
- 중국 저작권법 1차 및 2차 개정
- 중국 저작권법 3차 개정의 주요 경과와 개정안에 대한 설명

### III. 2020년 개정 저작권법의 주요 내용

- 징벌적 손해배상제도의 도입 및 법정 배상의 상한 조정
- 저작물 예시 규정의 보완과 '시청각 저작물' 개념의 도입

### 3. 방송권의 객체 확대

- 저작권주관부처 행정집행권한 강화 및 법원의 권한 강화
- 기타 주요 개정 내용

### IV. 개정 저작권법의 문제점

- 저작재산권을 구성하는 지분권을 열거함과 동시에 개괄규정을 두고 있다는 점
- 시청각저작물 영상제품의 구별
- 수정권과 동일성유지권 관계

### V. 결론

\* 중국 남경항공항천대학(南京航空航天大学) 인문사회과학대학 법학과(人文与社会科学学院法律系) 부교수.

## 초 록

중국 저작권법 3차 개정이 2020년 11월에 확정되어 2021년 6월부터 시행된다. 주된 개정사항은 다음과 같다. 1. 징벌적 손해배상제도를 도입했고, 법정배상의 상한을 500만 위안으로 상향 조정하는 등 저작권 침해에 대한 민사책임을 강화했다. 2. 저작물 예시 규정을 개정했고, ‘시청각 저작물’이라는 용어를 도입했다. 3. 방송권의 대상 확대로 유선방송도 방송권의 객체에 포함하였다. 4. 저작권 주관부처의 행정집행권한을 크게 강화했으며, 법원의 직권 조사 등 권한도 강화하였다. 이외에도 일부 하위법령에 규정된 내용을 저작권법으로 격상시켰다. 이번 저작권법 개정으로 향후 중국 내 대규모의 조직적인 저작권 침해가 감소할 것이며, 소송에서 승소할 경우 충분한 배상을 받을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따라서 우리 권리자들이 중국 내 저작권 침해에 더욱 적극적으로 대응할 필요가 있다.

## 주제어

중국 저작권법, 3차 개정, 징벌적 손해배상제도, 법정배상제도, 시청각 저작물

## I. 서론

지난 2011년 개시된 중국 저작권법 3차 개정이 약 10년 만인 2020년 11월 11일에 결정의 형식으로 최종 확정되어 2021년 6월 1일부터 시행된다.<sup>1)</sup> 2011년에 3차 개정이 개시되었지만 지지부진하던 저작권법 3차 개정이 2020년 들어 빠른 속도로 진행된 이유는 중국의 수도인 ‘베이징’이 들어간 국제조약인 ‘시청각 실연에 관한 베이징조약(Beijing Treaty on Audiovisual Performance)’이 발효되었고, 저작권 등 지식재산권 관련 내용이 적지 않게 포함된 중국 첫 민법전이 공포되어 곧 시행을 앞두고 있었기 때문이다.

중국의 이번 저작권법 개정에 우리 정부는 물론 문화 콘텐츠 기업들이 큰 관심을 가지고 있다. 이유는 중국은 우리 게임, 드라마, 영화 등 한류 콘텐츠가 가장 많이 수출되는 국가이지만, 그동안 우리 콘텐츠의 저작권이 제대로 보호받지 못했기 때문이다. 현재 각국은 저작권 보호에 관한 빠른 협약 혹은 FTA 등 양자간 또는 다자간 조약을 통해서도 저작권 등 지식재산권 보호를 위하여 노력하지만, 여전히 해당 국가의 국내법(저작권법)을 통해서 보호가 이뤄진다는 현실을 고려해 볼 때 중국 저작권법의 개정은 우리에게 매우 중요하다고 할 수 있다. 따라서 아래에서는 중국 저작권법 변천사, 개정된 주요 내용과 문제점, 우리에게 주는 시사점에 대해 살펴보기로 한다.

---

1) 중국 저작권법 3차 개정은 2011년 국무원 입법계획에 포함되었고, 2011년 7월 13일 국가관권국이 베이징에서 ‘저작권법 제3차 개정 개시 회의 및 전문가 임명식(著作权法第三次修订启动会议暨专家聘任仪式)’을 개최한 후 본격적으로 시작되었다. 이후 약 10년의 세월이 흐른 2020년 4월 26일 중국 중앙정부인 국무원이 ‘저작권법 개정안 초안(著作权法修正案草案)’을 제13기 전국인민대표대회 상무위원회 제17차 회의에 정식으로 심의 요청했으며, 2회에 걸친 심의 후 2020년 11월 11일 개정안이 결정의 형식으로 최종 확정되었다.

## II. 중국 저작권법의 변천

### 1. 중국 저작권법의 체계

#### (1) 중국법령의 체계

중국 저작권법은 다양한 법원(法源)으로 구성되어 있다. 따라서 중국법의 법령체계를 먼저 간략하게 살펴본다.

국가의 근본법으로 ‘헌법’이 존재하고, 의회에 해당하는 전국인민대표대회(이하 ‘전인대’)와 그 상무위원회가 제정하는 ‘법률’, 중앙정부인 국무원이 제정하는 ‘행정법규’, 국무원 각 부와 위원회가 제정하는 ‘부문규장’이 있다. 이들 법령들은 중국 전역에 영향을 미치는 중앙법규에 해당하며 우리의 협의의 법령에 해당하는 규범이다. 또한 우리의 자치법규와 유사한 중국의 지방 각지 인민대표대회가 제정하는 ‘지방성법규’와 지방정부가 제정하는 ‘지방정부규장’이 존재한다.<sup>2)</sup>

이 외에 중국의 정식 법원(法源)에는 포함되지 않지만 대외적인 구속력을 가진 규범으로 우리법에는 없는 ‘규범성문건’<sup>3)</sup>과 ‘사법해석’<sup>4)</sup>이 존재한다.

이를 우리와 법령체계와 비교하면 다음과 같다.

---

2) 우리와 차이점은 지방정부가 지방자치를 실시하고 있지 않다는 점이다. 따라서 중국의 경우 자치법규라는 용어보다 ‘지방법규’라는 용어를 사용하는 게 더욱 타당해 보인다. 이와 달리 중국의 경우 소수민족자치를 위하여 민족지역자치제도를 시행하고 있다. 이들 지역에서는 자치조례와 단행조례를 규정할 수 있는데 이들 규범들을 중국에서는 자치법규라고 부른다. 이에 관한 자세한 내용은 손한기, “중국식 위헌심사제도로서 헌법 감독제도의 현황과 과제 - 위헌법률에 대한 통제가능성을 중심으로”, 『헌법재판연구』, 제3권 제2호(2016), 281-284면 참조해 주기 바란다.

3) ‘규범성문건’은 행정기관이 제정하는 행정법규와 규장 즉 협의의 행정입법 이외의 대외적인 구속력을 가지는 법규를 가리킨다. 编写组, 『行政法与行政诉讼法』, 第二版, 高等教育出版社, 2018年, 第104页.

4) ‘사법해석’은 최고인민법원과 최고인민검찰원이 제정하는 ‘재판’ 또는 ‘검찰’업무에서 법률의 구체적인 적용에 관한 해석으로 법률에 위배되지 않는 범위 안에서 법률과 동일한 효력을 가진다.

헌법은 우리와 동일하고, 법률의 경우 중국은 전인대가 제정하는 기본법률과 전인대 상무위원회가 제정하는 기타법률(혹은 비기본법률)로 구분된다.<sup>5)</sup> 중국 저작권법을 포함해 전리법, 상표법, 부정경쟁방지법 등 지식재산권 관련 법률은 모두 전인대 상무위원회가 제정해서 개정하고 있다. 우리의 명령에 해당하는 행정법규는 우리의 대통령령(시행령)에 해당하고 부문규장은 우리의 부령(시행규칙)에 해당한다. 지방성법규는 우리의 조례에 지방정부 규장은 규칙에 해당한다고 할 수 있다.

## (2) 중국저작권법의 법원

중국 저작권법의 법원 또한 법률·행정법규·지방성법규·부문규장·지방정부규장·규범성문건·사법해석과 저작권 관련 국제조약 등 다양한 법령과 국제조약으로 구성되어 있지만 일반적으로 1개 법률과 6개의 조례<sup>6)</sup>가 핵심이다.<sup>7)</sup>

먼저 중국 저작권법은 1990년 9월 7일 제7기 전국인민대표대회 상무위원회 제15차 회의에서 통과되어 1991년 6월 1일부터 시행되고 있다. 우리 저작권법이 1957년 제정되어 실시된 것과 비교하면 상당히 늦은 시간에 저작권법이 제정되었고 개정의 횟수도 현재까지 3회에 불과하다.<sup>8)</sup>

저작권법의 제정 이후 국무원은 저작권법의 유관 규정에 근거하여, ‘국제저작권실시조례(实施国际著作权条约规定)’, ‘컴퓨터소프트웨어보호조례(计算机软件保护条例)’, ‘저작권법실시조례(著作权法实施条例)’, ‘저작권집중관리조례(著

5) 중국의 경우 의회인 전인대는 매년 3월에 단 1번 회의를 개최할 뿐이다. 또한 회기가 10일 정도밖에 되지 않기 때문에 사실상 의회로서의 역할과 기능을 할 수 없다. 따라서 상설기관인 상무위원회를 설치하여 운영하고 있다. 비록 중국에서 ‘기본법률’과 ‘기타법률’이 제정 주체에 따라 구분되지만, 사실상 두 법률 간에 내용적 효력적 차이가 존재하지 않으며, 중국의 입법현실에 있어서 법률의 약 80%를 전인대 상무위원회가 제정했다. 이에 관한 상세한 내용은 손환기, 앞의 논문, 277면 참조.

6) 중국에서 ‘조례(条例)’란 국무원이 제정한 행정법규를 지칭한다.

7) 阎晓宏, 『《著作权法》颁布30年: 历史, 经验与反思』, 中国出版, 2020年 第21期, 第6页.

8) 1949년 중화인민공화국 건국 이전 시기에도 저작권법이 존재했는데, 이에 관한 내용은 구효영, “중국 저작권법의 손해배상제도에 관한 고찰”, 『지식재산연구』 제15권 제1호 (2020), 109-110면을 참조해 주기 바란다.

作权集体管理条例), ‘정보네트워크전파권조례(信息网络传播权条例)’, ‘라디오방송국·TV방송국 음반제품 보수지불집행방법(广播电台电视台录音制品支付报酬暂行办法)’ 등 총 6개의 행정법규를 제정해서 공포했다.

우리 저작권법과 달리 저작권 침해죄에 대해서는 ‘형법’<sup>9)</sup>이 규정하고 있으며, 중국의 저작권행정관리부처인 국가판권국은 현재까지 9개의 부문규장과 44개의 규범성문건을 제정해서 공포했다.

중국 최고인민법원은 저작권법을 둘러싼 민사와 형사실무에서 저작권법의 구체적인 적용과 관련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7개의 사법해석과 지도의견을 발표했으며, 일부 성·자치구·직할시 인민대표대회 상무위원회 또는 지방 각급정부도 현지 상황에 근거해서 지방성 법규 또는 지방정부 규장을 제정해서 공포한 바 있다.

중국은 현재까지 베른협약, 세계저작권협약(UCC), 음반협약(제네바협약), TRIPs협정, 저작권조약(WCT)과 실연음반조약(WPPT), 시청각 실연에 관한 베이징 조약 등 모두 7개 국제조약에 가입했다.

위와 같이 중국 저작권법 법원 혹은 그 체계는 비교적 복잡하지만, 그중 저작권법을 제외한 유관 행정법규와 규장, 사법해석도 매우 중요하다는 점이 특징이다. 특히 소송에 있어서는 최고인민법원이 제정한 ‘사법해석’이 가장 중요한 법원으로서 기능한다.<sup>10)</sup>

9) 중국 형법 제217조(저작권 침해죄): “영리를 목적으로, 아래에 열거된 저작권 침해의 상황 중 하나에 해당하며, 위법소득의 액수가 비교적 크거나 또는 기타 엄중한 정황이 있는 경우, 3년 이하의 유기징역 또는 구역에 처하며, 벌금을 병과하거나 또는 단독으로 부과할 수 있다. 위법소득의 액수가 거대하거나 또는 기타 특히 엄중한 정황이 있는 경우, 3년 이상 7년 이하의 유기징역에 처하며 벌금을 병과한다. ① 저작권자의 허락 없이, 어문, 음악, 영화, 드라마, 음반, 소프트웨어, 기타 저작물을 복제해서 발행하는 경우, ② 타인이 배타적 발행권을 가진 도서를 출판하는 경우, ③ 음반 및 방송제작자의 허락 없이 이를 복제해서 발행하는 경우, ④ 타인의 서명을 사칭한 미술저작물을 제작, 판매하는 경우”.

10) 중국 저작권법은 우리와 달리 일부 중요한 내용을 저작권법이 아닌 하위법인 행정법규에 포괄적으로 위임한 경우가 많다. 또한 상위법에 규정되어 있지 않은 법규사항을 규장 등 하위 법령에서 먼저 정하기도 한다. 따라서 중국 저작권법을 포함한 지식재산권법의 내용과 체계를 바로 이해하기 위해서는 부득이 법률은 물론 행정법규, 규장, 규범성문건, 사법해석 등 하위 규정들까지 꼼꼼히 살펴봐야 한다. 이는 중국법 전반의

## 2. 중국 저작권법 1차 및 2차 개정

중국 저작권법은 2001년 10월 27일 1차 개정되었고, 2010년 2월 26일 2차 개정되었다. 이러한 1차와 2차 개정은 모두 세계무역기구(WTO)와 관련이 있으며, 부분개정이다. 1차 개정의 경우 중국 정부가 WTO에 가입하기 위하여 저작권법을 개정했다면, 2차 개정의 경우 WTO에서 심의된 미국과 중국 간의 지식재산권 분쟁사건에 대한 재결 결과에 따라 부득이하게 저작권법을 개정하였다.

### (1) 1차 개정의 주요 내용

① 저작재산권의 지분권을 구체화했다. 구 저작권법 제10조 제5항은 저작재산권으로 단지 이용권과 보수취득권만을 규정하고 있었지만, 1차 개정에서는 저작재산권을 13개의 권리 즉 복제권, 배포권, 대여권, 전시권, 공연권, 방영권, 방송권, 정보네트워크전파권(전송권), 촬영권, 개편권, 번역권, 편집권 및 반드시 저작권자가 향유하는 기타 권리로 세분화했다.

② 저작권의 객체를 조정 및 확대했다. 잡기에술저작물, 건축저작물, 편집저작물을 저작물의 유형으로 열거했다.

③ 저작인접권자의 권리를 더욱 강화했는데, 그중 우리에게 없는 판식설계에 관한 내용을 신설하였다.

④ 권리의 제한(공정이용)과 관련한 내용을 국제조약의 내용에 부합하게 보완했으며, 법정허락제도를 보완했는데 특히 교과서 편찬과 관계된 법정허락제도를 도입하였다.

⑤ 저작권 보호를 강화했는데, 주된 내용은 법정배상제도 도입, 다양한 가처분제도 도입 등을 들 수 있다.

---

특징이자 문제점이기도 하다.

## (2) 2차 개정의 주요 내용

① 구 저작권법 제4조 제1항은 “법에 따라 출판, 전파(보급)가 금지된 저작물은 이 법의 보호를 받지 않는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제2항은 “저작권자가 저작권을 행사하는 경우, 헌법과 법률에 위반할 수 없으며, 공공이익에 손해를 끼쳐서는 안 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따라서 제1항을 삭제하고, 제4조를 “저작권자가 저작권을 행사하는 경우, 헌법과 법률에 위반할 수 없으며, 공공이익에 손해를 끼쳐서는 안 된다. 국가는 저작물의 출판과 보급에 대하여 법에 따라 감독·관리한다”라고 개정하였다.

② 제26조를 신설하여 “저작권에 질권을 설정하는 경우, 질권설정자와 질권자는 국무원 저작권행정관리부처에 질권설정등록을 해야 한다”고 규정하였다.

## 3. 중국 저작권법 3차 개정의 주요 경과와 개정안에 대한 설명

### (1) 3차 개정의 주요 경과 및 개정 지연 원인 분석

1차와 2차 개정과 달리 2011년 7월부터 본격적으로 개시된 저작권법 3차 개정은 중국 정부가 저작권법을 제정한 이후 처음으로 자발적으로 개시한 개정이다. 개정 경과를 간단히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국가관권국이 2012년 3월 저작권법(개정초안)을 공포하여 약 1달간의 의견수렴절차 진행 ⇨ 국가관권국 개정초안에 대한 사회 각계의 의견을 수렴 후, 개정안을 수정하여 2012년 7월 6일에 저작권법(개정초안 제2안)에 대한 의견수렴 재차 실시 ⇨ 2014년 국무원 법제판공실은 저작권법(개정초안 심의안)을 확정하여 의견수렴절차 진행.

여기까지가 국무원 내부의 저작권법 개정 경과이다. 이후 6년이 지난 2020년 국무원은 전인대 상무위원회에 저작권법 개정안에 대한 심의를 요청한 후 개정안을 공개하였다.

저작권법 개정이 지연된 주요 원인은 중국에서 콘텐츠 산업 등 문화산업의 비약적인 발전으로 인하여 저작권의 경제적 가치가 크게 높아짐에 따라

저작권법 개정을 둘러싼 이해관계자들의 의견대립이 첨예하게 대립했기 때문이다. 또한 2018년 중국 정부의 구조개혁으로 인하여 일부 기관의 통폐합이 추진되었던 점도 주요 원인 중 하나이다. 주지하다시피 국무원에 속해 있던 국가관권국이 당 중앙선전부 소속으로 변경되었다.<sup>11)</sup> 따라서 국가관권국은 현재 중앙선전부 관권관리국이라는 명칭으로 활동하고 있다. 또한 우리의 법제처 기능을 하던 국무원 법제판공실이 폐지되고, 기존 법제판공실의 기능이 사법행정을 담당하던 사법부로 이관되었다.

한편 2020년 전인대 상무위원회에 심의 요청된 개정안의 경우 지난 2012년 국가관권국의 개정안 및 2014년에 국무원 법제판공실에서 공개한 개정안과 큰 차이가 있다. 왜냐하면 2012년과 2014년에 공개된 개정안의 경우, 현행 저작권법에 대한 전면개정으로 저작권법의 체계와 내용 등 많은 면에서 상당한 변화를 예정하고 있었다.<sup>12)</sup> 하지만 2020년 공개된 저작권법 개정안은 부분개정으로, 개정된 내용이 많지는 않지만 징벌적 손해배상의 도입, 법정배상액의 상한 조정, 시청각 저작물 개념 도입 등 매우 중요한 내용의 개정이 포함되어 있다. 여기서 알 수 있듯이 2020년 개정안은 2014년 개정안의 일부 내용을 반영하고 있지만, 2014년 개정안에 비하면 매우 소극적이고 부분적인 개정에 그치고 있다.

---

11) 2018년 정부기구 구조개혁으로 인하여 중국 지식재산권국의 권한에도 변경이 있었다. 이전 중국 지식재산권국은 전리(특허, 실용신안, 디자인)만을 전담했으나, 구조개혁 이후, 상표와 지리적 표시 관리 업무도 담당하게 되었다. 따라서 현재 중국의 지식재산권 담당기구는 우리와 같이 산업재산권은 지식재산권국이 저작권은 국가관권국이 담당한다. 하지만 행정기관인 지식재산권국과 달리 국가관권국은 중앙선전부 산하의 기관이 되었다.

12) 2012년과 2014년 개정안은 저작권법의 전면개정으로 저작권법의 기본 체계 변경은 물론 현행법에는 없는 다양한 내용을 새롭게 도입하려고 했다. 대표적으로 이번에 도입된 징벌적 손해배상제도 이외에도 추급권과 확대된 집중관리제도의 도입이 그것이다. 하지만 중국의 권리자와 유관 단체들이 확대된 집중관리제도 도입을 강력히 반발함에 따라 무산되는 등 저작권법 3차 개정과 관련하여 다양한 이견이 표출되었다. 이로 인하여 저작권법 개정이 지연되었다.

## (2) 2020년 개정안(초안)에서 언급된 개정의 필요성 및 주요 개정내용<sup>13)</sup>

### 1) 개정의 필요성<sup>14)</sup>

최근 우리나라 경제·사회발전과 더불어, 저작권 보호 영역에서 일부 새로운 상황, 새로운 문제가 출현했고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저작권법을 개정하는 것이 시급하다.

① 온라인화·디지털화 등으로 대표되는 신기술의 빠른 발전·응용으로 인하여 일부 규정이 현실의 필요에 부응하지 못하고 있다.

② 저작권 보호를 위한 비용이 많이 드는 반면, 침해로 인한 배상금은 낮고, 집행의 수단이 부족하며, 저작권 침해행위를 효과적으로 억제하지 못하고, 권리보호의 실제 효과가 권리자의 기대와 큰 차이가 있다.

③ 현행 저작권법의 일부 규정은 우리나라가 최근 가입한 국제조약 및 새롭게 공표한 민법총칙 등 법률과의 연계를 강화해야 할 필요성이 있다.

### 2) 주요 개정 내용<sup>15)</sup>

#### ① 현실적 필요에 따른 유관 개념의 표현 수정과 새로운 제도 도입

신기술의 빠른 발전과 응용이 저작권 입법에 제기한 새로운 요구에 적용하고, 현행 저작권법의 일부 규정이 새로운 사물(新事物)을 포함하지 못하고 있는 문제, 새로운 형세(新形勢)에 적용하지 못하는 등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

---

13) 아래 내용은 지난 2020년 4월 30일 중국 사법부 부부장이 저작권법 개정과 관련하여 전인대 상무위원회에서 보고한 ‘중화인민공화국 저작권법 개정안(초안)에 관한 설명(关于《中华人民共和国著作权法修正案(草案)》的说明)’을 요약 정리한 내용이다. 이 ‘설명’은 중국이 이번 저작권법을 개정하는 이유와 주요 개정사항들을 대내외에 소개하는 자료이기에 매우 중요하다고 할 수 있다.

14) 저작권법 3차 개정의 필요성에 관한 학계의 대표적인 견해는 吴汉东·刘鑫, “我国《著作权法》第三次修订之评析”, 『东岳论丛』, 2020年 第1期 및 刘春田, “《著作权法》第三次修改是国情巨变的要求”, 『知识产权』, 2012年 第5期를 참조해 주기 바란다.

15) 전인대 헌법 및 법률위원회는 개정안 발표 이후 2회에 걸쳐서 개정안을 심의하여 일부 내용을 변경하였다. 그중 개정안에 포함된 저작권 남용행위에 대한 처벌 규정 등이 심의과정에서 최종 삭제되는 등 일부 내용의 변경이 있지만 개정안의 기본 내용에 큰 변화는 없다.

하여 개정안 초안은 다음과 같이 규정하였다.

- '영화저작물 및 영화촬영과 유사한 방법으로 창작된 저작물'을 '시청각 저작물(视听作品)'로 변경했다.

- 저작물등록제도를 도입하여 공중에게 저작물의 권리귀속상황을 쉽게 파악할 수 있도록 하였다.

- 온라인 동시중계를 통한 저작물 이용 등 신기술의 발전요구에 부응하기 위하여 방송권과 관련된 표현을 수정하였다.

- 라디오방송국·TV방송국이 저작인접권자인 경우, 권리객체는 그들이 방송하는 '프로그램을 포함하고 있는 신호'이며, 그들이 방송하는 '프로그램을 포함하고 있는 신호'에 대하여 전송권(信息网络传播权)을 향유한다.

- 기술조치와 권리관리정보와 관련된 규정을 추가하여, 온라인과 오프라인에서 기술조치와 권리관리정보의 동시 보호 문제를 해결하였다.

## ② 저작권법 집행의 강도와 침해행위에 대한 처벌의 강도를 강화했다.

저작권 권리보호의 어려움을 해결하고, 주관 부처의 집행수단의 상대적 부족 및 상대적 약함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개정안 초안은 아래와 같이 개정하였다.

- 침해행위의 정황이 엄중한 경우 배상금의 1배 이상 5배 이하의 징벌적 배상을 적용할 수 있다.

- 법정배상액의 상한을 현행 50만 위안에서 500만 위안으로 상향 조정한다.

- 이용료(라이선스비)의 배수(倍数)를 배상금 계산의 참조로 삼으며, 침해자에게 침해와 관련된 장부·자료를 제공하라고 명령할 수 있는 제도를 도입하였다.

- 저작권 주관부처가 당사자에게 문의할 수 있고, 위법행위를 조사할 수 있고, 현장을 검사할 수 있고, 유관 자료를 열람 및 복제할 수 있으며, 유관 장소와 물품에 대한 폐쇄(폐기) 및 압류 등을 할 수 있는 권한을 추가했다.

- 저작권 또는 저작인접권을 남용하여 전파질서(传播秩序)를 어지럽히는

행위에 대한 법적 책임을 추가했고, 저작권 침해로 인하여 공공이익에 손해를 가하는 행위의 법적 책임을 더욱 명확히 하였다.

③ 기타 법률과의 연계를 강화하고, 우리나라가 최근 가입한 유관 국제조약상의 의무를 이행한다.

민법총칙, 계약법, 민사소송법 등 기타 법률과 일치시키기 위하여, 개정안 초안은 다음과 같이 규정했다.

- ‘공민’을 ‘자연인’으로, ‘기타 조직’을 ‘비법인조직’으로 개정했다.

- 위약책임(違約責任), 소송권리와 보전 등의 조항을 삭제했고, “당사자가 계약의무를 이행하지 않거나 또는 이행한 계약의무가 약정에 부합하지 않을 경우 민사책임을 부담하며, 당사자가 소송권리를 행사하고 보전(保全)신청 등을 하는 경우 유관 법률의 규정을 적용한다”고 하여 타법과의 연계를 강화하였다.

우리나라가 최근 가입한 유관 국제조약의 요구를 실현하기 위하여, 개정안 초안은 다음과 같이 규정했다.

- 대여권의 대상을 시청각 저작물, 컴퓨터 소프트웨어 원본 또는 복제품으로 명확히 하였다.

- 사진저작물의 보호기간을 연장했다.

- 합리사용(공정이용) 조항에 “해당 저작물의 정상적 이용에 영향을 미쳐서는 안 되며, 불합리하게 저작권자의 합법권익을 침해해서는 안 된다” 등의 내용을 추가했으며, 맹인(盲人)의 합리사용을 ‘독해에 장애가 있는 자(阅读障碍者)’로 확대하였다.

- 실연자가 타인에게 자신의 실연이 저장된 음반·영상제품을 대여하도록 허락하고 보수를 받을 권리를 추가하였다.

- 음반제작자의 방송에서의 보수를 받을 권리와 기계적 실연권을 추가하였다.

이 외에도 개정안은 일부 필요한 문구 수정 및 조문의 순서를 조정하였다.

### Ⅲ. 2020년 개정 저작권법의 주요 내용

#### 1. 징벌적 손해배상제도의 도입 및 법정배상의 상한 조정

개정 저작권법 제54조 제1항은 “저작권 또는 저작권접권을 침해한 경우, 침해자는 반드시 권리자가 입은 실제손실 또는 침해자의 위법소득으로 배상해야 한다. 권리자의 실제손실 또는 침해자의 위법소득 산정이 어려운 경우, 해당 권리의 이용료 참조하여 배상할 수 있다. 고의로 저작권 또는 저작권접권을 침해하고, 정황이 엄중한 경우, 상술한 방법으로 확정된 금액의 1배 이상 5배 이하의 배상을 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제54조 제2항은 “권리자의 실제손실 · 침해자의 위법소득 · 권리의 이용료를 산정하기 어려운 경우, 인민법원은 침해행위의 정황에 근거하여 500위안 이상 500만 위안 이하의 배상을 판결할 수 있다.”고 개정했다. 즉 여기서 알 수 있듯이 개정 저작권법은 1배 이상 5배 이하의 징벌적 손해배상제도를 도입했으며, 법정배상의 상한을 기존 50만 위안에서 500만 위안으로 대폭 상향 조정함과 동시에 하한을 500위안으로 정했다.<sup>16)</sup>

‘징벌적 배상제도’는 불법행위 사건에서 법원이 당사자의 신청에 따라, 침해자의 주관적 고의 또는 악의 정도에 근거하여, 권리자가 입은 실제손실 또는 침해자가 얻은 위법소득의 액수 및 라이선스비 등 요소에 근거하여, 침해자에게 전보성 경제손실 이외의 징계적, 위협적, 예방적 성질을 가진 배상을

16) 2019년 개정된 반부정당경쟁법 제17조는 징벌적 손해배상제도(1배-5배)와 법정배상제도(500만 위안 이하의 배상)를 도입했고, 2019년에 개정된 상표법 제63조 또한 징벌적 손해배상제도(1~5배)와, 법정배상(500만 위안 이하의 배상)과 관계된 내용을 개정 및 도입하였다. 최근 개정된 중국 전리법 제71조도 징벌적 손해배상제도(1~5배)를 도입했고 법정배상제도(3만 위안 이상 500만 위안 이하)를 개정하였다. 또한 2020년에 제정되어 2021년 1월 1일부터 시행되는 중국 첫 ‘민법전’ 제1185조 또한 “고의로 타인의 지식재산권을 침해했고, 그 정황이 엄중한 경우, 피침해자는 상응한 징벌적 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와 같이 현행 중국의 지식재산권법제는 모두 1배 이상 5배 이하의 징벌적 손해배상제도와 500만 위안 이하의 법정배상제도를 규정하고 있다.

말한다.<sup>17)</sup> 이와 달리 ‘법정손해배상제도’란 민사소송에서 원고가 실제 손해를 입증하지 않은 경우에도 사전에 저작권법에서 정한 일정한 금액을 법원이 원고의 선택에 따라 손해액으로 인정할 수 있는 제도를 말한다.<sup>18)</sup> 중국의 경우 지난 2013년 상표법 개정 때 징벌적 배상제도를 도입했지만, 현재까지 이 제도가 제대로 실시되고 있지 않으며, 사실상 법정배상제도가 징벌적 배상제도의 기능을 대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sup>19)</sup> 따라서 징벌적 배상제도가 제대로 운영되기 위해서는 징벌적 배상의 요건인 ‘고의’의 의미와 ‘엄중한 정황’에 대한 명확한 판단기준이 마련될 필요가 있으며, 징벌적 손해배상액의 산정 기준이 되는 권리자의 실제손실, 침해자의 위법수익 혹은 통상의 라이선스비를 확정할 수 있도록 권리자의 입증책임을 경감하거나 또는 침해자의 입증책임을 강화하는 방향으로의 입법적 개선이 필요하다.

이외에도 과거에는 저작권 침해로 인한 손해배상을 권리자의 실제손실, 침해자의 위법수익, 법정배상의 순서로 차례대로 검토되었는데, 이번 개정에서는 권리자의 실제손실 또는 침해자의 위법소득을 선택해서 청구할 수 있게 했으며, 또한 실제손실 또는 위법소득의 산정이 어려운 경우 통상의 이용료(라이선스비)를 참조하여 손해배상금을 산정하게 하였다.

## 2. 저작물 예시 규정의 보완과 ‘시청각 저작물’ 개념의 도입

현행 저작권법 제3조는 “이 법이 말하는 저작물이란, 아래의 형식으로 창

17) 李扬·陈曦程, 论著作权惩罚性赔偿制度——兼评《民法典》知识产权惩罚性赔偿条款, 知识产权, 2020年 第8期, 第35页.

18) 이혜완, 『저작권법』, 제2판, 박영사, 2012년, 881면.

19) 상표법에서 징벌적 배상제도가 도입된 후 약 5년 동안 3085건의 상표권 침해 판결문을 분석한 결과 단지 1건만이 징벌적 배상을 적용하였으며, 중국재판문서망에서 ‘상표권 침해 분쟁’과 ‘징벌적 배상’을 검색어로 해서 검색한 159건의 판결문 중 95개의 사안에서 원고가 징벌적 배상제도의 적용을 주장했지만, 최종적으로 4건만 받아들여졌으며, 76건의 판결문에서는 피고의 고의가 명확하고 정황이 엄중함에도 불구하고 징벌적 배상이 아닌 법정배상을 적용했다고 한다. 이에 관한 자세한 내용은 欧阳福生, 侵害知识产权惩罚性赔偿数额的确定——谈《民法典》第1185条适用的困境, 电子知识产权, 2020年 第10期, 第76页.

작된 문학, 예술 및 자연과학, 사회과학, 공정기술 등 저작물을 포함한다.”라고 하고 있으며 제1호에서 제8호까지 다양한 유형의 저작물을 열거하고 있다. 또한 제9호는 “법률, 행정법규가 규정한 기타 저작물”이라고 정하고 있는데, 따라서 현행 중국 저작권법 제3조를 외관상 저작물을 ‘예시’한 것이 아니라 ‘열거’한 것과 같은 인상을 준다. 따라서 개정 저작권법은 “이 법이 말하는 저작물이란 문학, 예술 및 과학영역 내의 독창성이 있고 또한 일정한 형식으로 표현된 지적 성과로서 아래의 것을 포함한다.”라고 하면서 제9호를 ‘저작물의 특징에 부합하는 기타 지적 성과’라고 개정했다. 즉 개정 저작권법 제3조는 저작물의 열거 규정이 아닌 예시규정이라는 것을 명확히 했으며 앞으로는 저작물의 유형의 중요성이 크지 않게 되었다.

‘영화 및 영화 촬영과 유사한 방법으로 창작된 저작물’을 ‘시청각저작물(视听作品, 우리의 영상저작물에 해당)’로 개정했다. 따라서 다양한 유형의 영상저작물을 저작권법의 보호대상으로 삼을 수 있게 되었다. 특히 주목되는 점은 그동안 저작권법을 통한 보호가 문제되었던 온라인 게임방송<sup>20)</sup> 및 스포츠 경기 화면을 사법실무에서는 이미 시청각 저작물로 인정해서 보호하기 시작했다는 점이다.<sup>21)</sup>

한편 개정 저작권법 제17조<sup>22)</sup>는 시청각 저작물을 재차 영화 및 드라마 저작물과 여기에 속하지 않는 시청각 저작물로 구분하여 권리 귀속을 달리 정하고 있다. 하지만 이와 같은 구분이 필요한지 의문이다. 영화와 드라마의 경우 많은 사람이 제작에 참여하기 때문에 권리관계가 복잡해서 이와 같은

20) 广东省高级人民法院民事判决书(2018), 奥民终137号.

21) 上海市浦东新区人民法院民事判决书(2017), 沪0115民初88829号; 北京市高级人民法院(2020), 京民再128号.

22) 개정 저작권법 제17조: 시청각저작물 중의 영화저작물, 드라마 저작물의 저작권은 제작자가 향유하지만, 각본·감독·촬영·작사·작곡 등 저작자는 서명권을 향유하며, 또한 제작자와 체결한 계약에 따라 보수를 받을 권리를 가진다. 전항 규정 이외의 시청각저작물의 저작권의 귀속은 당사자가 약정한다. 약정이 없거나 또는 약정이 명확하지 않을 경우, 제작자가 향유하지만, 저작자는 서명권과 보수를 받을 권리를 가진다. 시청각저작물 중의 극본, 음악 등 단독으로 사용 가능한 저작물의 저작자는 저작권을 단독으로 행사할 수 있다.

규정을 둔 것으로 추측된다. 우리의 영상저작물에 대한 특례 규정과 유사한 취지이다. 다만 웹 드라마와 웹 영화가 여기에 포함되는지 여부가 문제되고 나아가 영화와 드라마 외의 다양한 시청각 저작물 또한 권리관계가 복잡한 건 동일하다는 비판이 가능하다. 예를 들면 여러 명이 참여해서 제작한 다크멘터리, 쇼트클립(짧은 동영상)도 권리관계도 복잡한 경우가 많으며, 최근에는 이러한 영상물을 이용하거나 또는 이를 원저작물로 해서 2차적 저작물로 만들어지는 경우도 적지 않다. 따라서 시청각 저작물에 관한 권리귀속을 일원화하는 것이 실제에 더욱 부합한다.

### 3. 방송권의 객체 확대

과거 온라인 실시간 중계로 인한 저작권 침해의 경우 중국에서 먼저 해당 프로그램을 저작물로 인정한 다음 저작권법이 열거한 구체적인 권리가 아니라 ‘저작권자가 향유하는 기타 권리’<sup>23)</sup>라는 개괄조항을 통하여 보호할 수밖에 없었다. 왜냐하면 현행 저작권법상 방송권은 오직 무선통신의 의한 송신 및 전달만을 방송권의 객체로 인정하고 있기 때문이다. 하지만 이번 개정에서 저작권법 제10조 제10호를 “방송권(广播权)이란 유선 또는 무선방식으로 공개적으로 저작물을 방송 또는 중계방송하거나, 확성기 또는 기타 부호·소리·이미지를 전송할 수 있는 유사 도구를 통하여 공중에게 저작물을 제공하거나 방송할 수 있는 권리이지만, 단동 조 제12항이 규정한 권리는 포함하지 않는다.”라고 개정하였다.<sup>24)</sup> 즉 ‘유선’통신도 방송권의 객체에 포함시켰기 때문에 향후 방송권을 통하여 그동안 방송권을 통한 보호가 문제되었던 유선방송, 온라인 생방송 및 온라인 실시간 중계를 보호할 수 있게 되었다. 따라서 중국 개정 저작권법상 ‘방송권’은 우리 저작권법상 방송권의 개념과 일치한다.<sup>25)</sup> 이와 관련하여 중국의 일부 학자들이 우리와 같은 ‘공중송신’

23) 중국 저작권법 제3조 제9호.

24) 개정 저작권법 제10조 제10호에서 제12항이란 우리의 전송권에 해당하는 ‘정보네트워크전파권(信息网络传播权)’을 말한다.

의 개념을 도입하여 방송권과 전송권의 문제를 일거에 해결하려는 의견을 개진하였지만, 최종적으로 받아들여지지 않았다.<sup>26)</sup>

#### 4. 저작권주관부처 행정집행권환 강화 및 법원의 권한 강화

사회주의국가인 중국의 경우 국가관권국 등 행정부처의 권한이 매우 강하며, 저작권 침해에 대한 행정책임을 매우 강조하고 있다. 이와 관련하여 저작권 침해에 대한 처벌 혹은 저작권 질서를 바로잡기 위하여 국가관권국 등 유관부처들은 웨탄<sup>27)</sup>을 적극 실시하고 있으며, 저작권 침해로 인한 공공이익의 침해를 방지하고 이를 처벌하기 위하여 다양한 수단을 부여하고 있다.

개정 저작권법은 저작권주관부처에게 위법경영액이 5만 위안 이상인 경우 위법경영액의 1배 이상 5배 이하의 벌금을 병과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했다. 만약 위법경영액이 없거나 위법경영액을 계산하기 어렵거나 또는 5만 위안에 달하지 않는 경우, 25만 위안 이하의 벌금을 병과할 수 있다.<sup>28)</sup> 또한

25) “(한국)저작권법의 이러한 태도는 저작권과 저작인접권의 보호에 관한 대표적인 국제 조약인 베른협약과 로마협약에서는 무선통신에 의한 것만 방송으로 보고 유선통신에 의한 것은 별도로 규정하고 있는 것과 구별된다. 방송의 특징으로는 그것이 공중이 동시에 수신하게 할 목적으로 송신되고, 이의 수단으로 전파(헤르츠파)가 활용된다는 것을 든다. 하지만 우리 저작권법은 유선통신에 의한 것도 별도로 취급하지 않고 단지 수신의 동시성만을 기준으로 방송의 개념에 포괄하여 정의하고 있다.” 임원선, 『실무자를 위한 저작권법』, 제5판, 한국저작권위원회, 2017, 141-142면.

26) 방송권과 전송권의 상위 개념으로서 공중수신권을 인정하지 않으며, 기술의 발전에 따라 새롭게 등장하는 다른 송신 형태에 대하여 저작권자가 이를 통제할 수 없게 되는 경우가 발생할 수 있다는 문제가 있다.

27) 웨탄(约谈)조치란 정부기관이 감독대상인 기업 또는 개인 등을 상대로 취하는 일종의 면담이지만 사실상 감독대상을 질책하고 또한 정부의 요구사항을 전하는 조치로 사실상 강제력을 가진 행정지도라고 할 수 있다.

28) 개정 저작권법 제53조: 아래에 열거된 침해행위가 있는 경우, 반드시 상황에 근거해서 이 법 제52조가 규정한 민사책임을 부담한다. 침해행위가 동시에 공공이익을 침해하는 경우, 저작권주관부처가 침해행위의 정지를 명령하고, 경고하며, 위법소득을 몰수하며, 주로 권리침해복제품과 권리침해복제품을 제작하는데 이용된 재료·도구·설비 등을 몰수 및 무해화 폐기 처리하며, 위법경영액이 5만 위안 이상인 경우 위법경영액의 1배 이상 5배 이하의 벌금을 병과할 수 있다.

위법경영액이 없거나 위법경영액을 계산하기 어렵거나 또는 5만 위안에 달하지 않는 경

당사자의 위법행위와 관련된 장소 및 물품에 대하여 현장검사를 실시할 수 있으며, 위법행위와 관계된 계약서·영수증·장부 및 기타 관련 자료를 복제할 수 있고, 위법행위와 관계된 장소와 물품에 대하여 폐쇄 또는 압류할 수 있다.<sup>29)</sup> 이와 같이 중국의 저작권 행정부처의 집행권한을 크게 강화했다. 우리와의 차이점은 행정기관이 검찰 혹은 법원 등 사법기관을 통한 영장청구 없이도 피조사자에 대한 다양한 조치인 압류, 폐쇄 등의 조치를 취할 수 있다는 점이다.

인민법원이 배상금을 확정하기 위하여 침해자에게 장부와 자료 등의 제출을 명령할 수 있는 권한을 명확히 했으며, 특수한 상황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 권리자의 청구가 있을 시 권리를 침해한 복제품의 폐기를 명령하도록 강제하였다.<sup>30)</sup> 권리자에게 있어서 저작권 침해소송에서 가장 어려운 문제 중 하나는 침해로 입은 손해에 대한 입증이다. 따라서 권리자가 저작권 침해로 인한 실제손실에 대한 입증이 어려운 경우, 법원에 요청하여 침해자의 장부 등 관련 자료를 적극 요청하여 피해자의 위법수익을 자신이 입은 손해로

우, 25만 위안 이하의 벌금을 병과할 수 있다. 범죄를 구성하는 경우, 법에 따라 행사책임을 추궁한다.

29) 개정 저작권법 제55조: 저작권주관부처는 저작권 및 저작권 관련 권리의 침해와 관련된 행위를 조사할 시 관련 당사자에게 문의할 수 있고, 위법행위와 관계된 상황을 조사할 수 있다. 당사자의 위법행위와 관련된 장소 및 물품에 대하여 현장검사를 실시할 수 있다. 위법행위와 관계된 계약서·영수증·장부 및 기타 관련 자료를 복제할 수 있다. 위법행위와 관계된 장소와 물품에 대하여 폐쇄 또는 압류할 수 있다.

저작권주관부처가 법에 따라 전항 규정의 권한을 행사하는 경우, 당사자는 반드시 협조 및 협력해야 하며, 거절하거나 방해할 수 없다.

30) 개정 저작권법 제54조 제4항: 인민법원은 배상금을 확정하기 위하여, 권리자가 필요한 거증책임을 다했지만, 침해행위와 관련된 장부·자료 등을 주로 침해자가 보유하고 있는 경우, 침해자에게 침해행위와 관련된 장부와 자료 등의 제출을 명령할 수 있다. 침해자가 제공을 거부하거나 또는 허위의 장부와 자료 등을 제공한 경우, 인민법원은 권리자의 주장과 제공한 증거를 참고하여 배상금을 확정할 수 있다.

인민법원이 저작권분쟁사건을 심리하는 경우, 특수한 상황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권리자의 청구가 있을 시 권리침해복제품의 폐기를 명령한다. 주로 권리침해복제품을 제조하는 데 이용되는 재료·도구·설비 등에 대한 폐기명령을 내려야 하며, 이에 대하여 보상하지 않는다. 또는 특수한 상황에서는 상술한 재료·도구·설비 등의 시장진입 금지를 명령하며, 이에 대하여 보상하지 않는다.

주장하는 것이 소송전략상 유리하다. 즉 침해자의 위법수익에 대한 증명이 과거보다 용이해질 것으로 보인다.

## 5. 기타 주요 개정 내용

### (1) 합작저작물의 권리귀속 명확화

개정 저작권법 제14조 제2항은 “합작저작물의 저작권은 합작저작자가 협상의 일치를 통하여 행사한다. 협상이 일치하지 않고 또한 정당한 이유가 없는 경우에는 어떠한 일방도 타방에게 양도, 독점적 이용허락, 질권 설정을 제외한 기타 권리행사를 방해할 수 없지만, 얻은 수익은 반드시 모든 합작저작자에게 합리적으로 분배해야 한다”라는 규정을 신설하였다. 중국에서 ‘합작저작물’은 우리의 공동저작물과 결합저작물을 총칭해서 부르는 용어이다.<sup>31)</sup> 따라서 위의 제14조 제2항의 ‘합작저작물’은 우리의 ‘공동저작물’을 의미하며, 제14조 제3항<sup>32)</sup>의 ‘합작저작물’은 우리의 ‘결합저작물’을 의미한다. 따라서 사실상 우리 저작권법과 차이가 없다고 할 수 있다.

### (2) 연기자의 업무상 실연에 대한 권리귀속 명확화

업무상 실연에서 연기자는 인격권을 가지며, 재산권의 경우 약정을 통해서 권리귀속을 정하며, 약정이 없거나 또는 명확하지 않은 경우 업무상 실연과 관련된 재산권은 연출기관이 가지도록 하였다.<sup>33)</sup>

31) 중국에서 ‘합작저작물(合作作品)’이란 우리의 공동저작물과 결합저작물을 총칭하는 용어로, 2인 이상이 함께 창작한 저작물을 말한다. 이외에도 우리와 일정한 차이점을 보이고 있는데, 이에 관한 상세한 내용은 손한기, “중국에서 온라인 게임의 법적 보호 - 중국 저작권법을 통한 보호를 중심으로”, 『아주법학』, 제13권 제3호(2019), 93-94면을 참조해 주시기 바란다.

32) 제14조 제3항은 “합작저작물을 분리해서 이용할 수 있는 경우, 저작자는 각자가 창작한 부분에 대하여 단독으로 저작권을 향유한다. 다만, 저작권을 행사할 때에는 합작저작물 전체의 저작권을 침해할 수 없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33) 개정 저작권법 제40조.

### (3) 저작권집중관리단체에 대한 규정 보완

현행 저작권법은 저작권위탁관리와 관계된 내용을 하위법인 ‘저작권집중관리조례(著作権集管理条例)’를 통하여 규정하고 있다. 하지만 개정 저작권법은 저작권위탁관리와 관련된 내용을 저작권법에 포함시켜서 그 법적 근거를 명확히 하였다.<sup>34)</sup> 하지만 여전히 저작권위탁관리와 관련한 세부 사항은 예전과 같이 행정법규인 ‘저작권집중관리조례’에 규정되어 있다.

### (4) 저작인접권자의 권리 강화

이번 개정에서는 저작인접권자의 권리를 강화하고 그 권리를 명확히 하는 개정도 포함되었다. 크게 3가지 내용으로 ① 실연자가 자신의 실연이 저장된 음반·영상제품에 대한 대여권을 가지도록 개정하였다.<sup>35)</sup> ② 음반영상제작자가 자신이 제작한 음반·영상제품을 타인에게 대여하도록 허가하는 경우, 그 타인으로 하여금 실연자의 허락을 받음과 동시에 보수를 지불하도록 개정하였으며, 음반제작자의 방송과 기계를 통한 공연에 있어서의 보수권을 신설하였다.<sup>36)</sup> ③ 라디오·TV방송국의 방송을 정보네트워크를 통하여 공중에게 송신하는 것을 금지할 수 있는 권리를 부여하였다.<sup>37)</sup>

---

34) 개정 저작권법 제8조: 저작권자와 저작권 관련 권리자는 저작권집중관리단체에 수권하여 저작권 또는 저작권과 관련된 권리를 행사하게 할 수 있다. 법에 따라 설립된 저작권집중관리단체는 비영리법인으로, 수권을 받은 이후 자신의 명의로 저작권자와 저작권 관련 권리자를 위하여 권리를 주장할 수 있다. 또한 당사자로서 저작권 또는 저작권 관련 권리와 관계된 소송, 중재, 조정활동을 할 수 있다. 저작권집중관리조직은 수권에 근거해서 이용자에게 이용료를 수취한다. 이용료의 수취기준은 저작권집중관리단체와 이용자 대표가 협상해서 확정하며, 협상이 성립되지 않을 경우, 국가저작권주관부처에 재결을 신청할 수 있으며, 재결에 불복하는 경우, 인민법원에 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 당사자는 직접 인민법원에 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

저작권집중관리단체는 반드시 이용료의 수취와 교부, 관리비용의 공제와 사용, 이용료 미분배 등 전체 상황을 정기적으로 사회에 공포해야 하며, 반드시 권리정보조회시스템을 구축하여 권리자와 이용자가 조회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저작권집중관리조직의 설립방식, 권리의무, 이용료의 수취와 분배 및 그에 대한 감독과 관리 등은 국무원이 별도로 규정한다.”

35) 개정 저작권법 제39조.

36) 개정 저작권법 제45조.

37) 개정 저작권법 제47조 제3항.

### (5) 기술적 보호조치 및 권리관리정보 관련 규정 신설

개정 저작권법은 기존 ‘정보네트워크전파권보호조례’에서 규정된 저작물의 유통과 이용을 통제하고 관리할 수 있는 기술 수단을 의미하는 ‘기술적 보호조치와 권리관리정보에 관한 규정’<sup>38)</sup>을 저작권법으로 격상시켰다.

개정 저작권법 제49조 제3항은 “기술조치란 권리자의 허락 없이 저작물, 실연, 음반을 열람, 감상할 수 있는 것을 방지 또는 제한하거나 또는 정보네트워크를 통하여 공중에게 저작물, 실연, 음반제품을 열람 및 감상할 수 있는 것을 방지 및 제한하는 유효한 기술, 장치 또는 부품을 말한다.”고 개념 정의하고 있다.

개정 저작권법 제51조는 “기술상의 원인으로 부득이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저작물·판식설계·실연·음반·영상물 또는 라디오방송과 TV방송의 권리관리정보를 고의로 삭제하거나 또는 변경하는 행위를 할 수 없다”고 규정함과 동시에 “저작물·판식설계·실연·음반·영상물 또는 라디오방송과 TV방송의 권리관리정보가 허락 없이 삭제 또는 변경되었다는 것을 알았거나 또는 반드시 알아야 했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공중에게 제공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있다.

### (6) 저작권 등록제도 도입

이전에는 저작권 등록과 관련한 사항은 저작권법이 아닌 국가판권국의 규장인 ‘저작물자원등록시행방법(作品自愿登记试行办法)’, ‘컴퓨터소프트웨어 저작권등록방법(计算机软件著作权登记办法)’, ‘저작권질권등록방법(著作权质权登记办法)’이 각각 정하고 있었다. 하지만 이번 개정에서 저작권 등록의 근거 규정을 마련하였다.<sup>39)</sup>

### (7) 공정이용규정 신설

개정 저작권법 제24조 제1항은 “아래에 열거된 상황에서 저작물을 이용하

---

38) 개정 저작권법 제51조.

39) 개정 저작권법 제12조 제2항.

는 경우, 저작권자의 허락을 받지 않아도 되고, 저작권자에게 보수를 지불하지 않지만, 저작자의 성명 또는 명칭, 저작물의 명칭은 반드시 명시하여야 하며, 해당 저작물의 정상적인 사용에 영향을 끼쳐서는 안 되며, 저작권자의 합법 권익에 불합리한 손해를 끼쳐서도 안 된다”라고 규정하여 그동안 저작권법실시조례 제21조에 규정되어 있던 ‘3단계 테스트’를 저작권법의 내용에 포함하였다. 또한 공정이용이 가능한 구체적인 상황을 열거한 후 제13호에 ‘법률, 행정법규가 규정한 기타 상황’이라는 개괄조항을 두었다.<sup>40)</sup> 즉 저작권법상 공정이용(저작권권의 제한)은 저작권법 이외의 법률, 행정법규가 더욱

40) 개정 저작권법 제24조 1항이 언급한 “아래에 열거된 상황”에는 다음의 경우가 포함된다.

1. 개인의 학습·연구·감상을 위하여 타인이 이미 공표한 저작물을 이용하는 경우.
2. 특정한 저작물을 소개하거나 평론하기 위하여 또는 특정한 문제를 설명하기 위하여 저작물에서 타인이 이미 공표한 저작물을 적절하게 인용하는 경우.
3. 신문보도를 위하여 신문·정기간행물·라디오방송국·TV방송국 등 매체가 이미 공표한 저작물을 불가피하게 재현 또는 인용하는 경우.
4. 신문·정기간행물·라디오방송국·TV방송국 등 매체가 타 신문·정기간행물·라디오방송국·TV방송국 등 매체가 이미 공표한 정치·경제·종교 문제에 관한 시사보도를 게재하거나 또는 방송하는 경우. 다만, 저작권자가 게재 또는 방송을 불허한다고 밝힌 경우는 제외한다.
5. 신문·정기간행물·라디오방송국·TV방송국 등 매체가 대중집회에서 발표한 연설을 게재 또는 방송하는 경우. 다만, 저작자가 게재 또는 방송을 불허한다고 밝힌 경우는 제외한다.
6. 학교 교육 또는 과학연구를 위하여 이미 공표된 저작물을 번역·개작(改編)·편집(汇编)·방송(播放) 또는 소량 복제하여 교육 또는 과학연구자의 이용에 제공하는 경우, 단 출판해서 배포할 수 없다.
7. 국가기관이 공무를 집행하기 위하여 이미 공표한 저작물을 합리적인 범위 이내에서 이용하는 경우.
8. 도서관·기록보존소(档案馆)·기념관·박물관·미술관·문화관 등에서 진열 또는 판본의 보전을 위하여 당해 시설에 소장한 저작물을 복제하는 경우.
9. 이미 공표된 저작물을무상으로 공연하고, 해당 공연이 공중에게 비용을 받지 않았으며 공연자에게 보상을 지불하지 않은 경우. 또한 영리를 목적으로 하지 않아야 한다.
10. 공공장소에 설치 또는 진열된 예술저작물을 모사하거나, 그림으로 그리거나 사진촬영하거나 녹화하는 경우.
11. 중국 자연인·법인 또는 비법인조직이 이미 공표된, 국가통용언어문자로 창작된 저작물을 소수민족의 언어로 번역하여 국내에서 출판해서 배포하는 경우.
12. 독서에 장애가 있는 자가 감지할 수 있도록 장애가 없는 방식으로 그들에게 이미 공표된 저작물을 제공하는 경우.
13. 법률·행정법규가 규정한 기타 상황.

구체화할 수 있지만, 아직 관련된 법률·법규는 존재하지 않는다.

#### IV. 개정 저작권법의 문제점

이번 저작권법 개정과 관련하여 중국학자들은 과거 2012년 및 2014년 개정안에 비교하여 매우 소극적인 개정이며, 인공지능 빅 데이터 등 4차 산업과 관련한 문제에 충분히 대처하지 못한 개정이라는 비판적인 견해가 존재한다. 이와 관련하여 중국 지식재산권법학회 회장인 류춘텐(刘春天) 교수는 한 논문에서 2020년 개정안을 다음과 같이 평가했다.

“2020년 4월 전국인민대표대회 상무위원회는 저작권법 개정안에 대한 심의를 시작했다.(중략) 8년 전의 두 개정안과 비교해 볼 때, 현재 심의 중인 개정안이 2012년과 2014년의 개정안과 비교적 큰 차이가 있고 이로 인하여 많은 사람들이 실망하고 이해가 되지 않는다고 말하고 있다”<sup>41)</sup>고 밝혔다. 또한 “이번에 공포된 저작권법 개정안은 10년이라는 오랜 세월을 공들여 만들었지만, 2012년 국가판권국의 의견안과 비교해 볼 때 개정임무, 목표, 지도사상과 원칙의 태도에서 중대한 변화가 있다. 전반적인 느낌은 이번 개정심의안은 중국의 기술경제발전과 사회생활에 뒤처지고, 또한 각국의 발전과 세계화라는 큰 추세도 따라가지 못하고 있다고 평가할 수 있다.”<sup>42)</sup>

이 외에도 3차 개정을 위하여 오랜 시간 동안 연구와 토론 등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중국 저작권법에는 여전히 몇 가지 문제점이 존재한다. 그중 가장 대표적인 문제점으로 지적되는 사항만 살펴보기로 한다.

41) 刘春天, “《民法典》与著作权法的修改”, 『知识产权』, 2020年 第8期, 第3页.

42) 刘春天, 앞의 논문, 第5页.

## 1. 저작재산권을 구성하는 지분권을 열거함과 동시에 개괄규정을 두고 있다는 점

권리의 다발인 저작권 속에는 다양한 지분적 권리가 포함되어 있다. 이에 중국 저작권법 제10조는 저작인격권과 저작재산권을 구성하는 다양한 지분권을 열거하고 있는 반면 동조 제1항 제17호는 “반드시 저작권자가 향유하는 기타권리”라는 일반조항을 두고 있다. 이는 결국 중국 저작권법 제10조가 규정한 저작권을 구성하는 다양한 지분권을 열거한 것이 아니라 예시한 것을 의미하게 된다. 하지만 이러한 규정은 준물권적 성질을 가진 저작권의 성질과 부합하지 않는다.<sup>43)</sup> 이는 저작권법이 열거하고 있는 구체적인 권리(지분권) 이외에도 법원이 해석을 통하여 새로운 권리를 인정할 수 있음을 의미한다. 물론 우리와 달리 저작물 이용기술의 발전에 신속한 대응이 가능하다는 장점은 있지만, 그 내용이 명확하지 않다는 단점과 더불어 이용자에게 예상치 못한 피해를 줄 수도 있다는 단점이 존재한다.<sup>44)</sup>

## 2. 시청각저작물 영상제품의 구별

개정 저작권법은 저작물의 유형으로 ‘시청각저작물’이라는 용어를 새롭게 도입한 반면, 저작인접권과 관련하여 ‘영상제품’이라는 개념을 그대로 두고 있다. 사실 중국에서는 이번 개정에서 ‘영상제품’을 삭제해야 한다는 의견이 상당히 많았다.<sup>45)</sup> 현재 중국의 사법실무에서는 독창성(창작성)의 높고 낮음 정도에 근거하여 독창성의 정도가 높아 저작물로 인정될 경우에는 ‘시청각저작물’로 인정하고 그렇지 않을 경우 저작인접권의 대상인 ‘영상제품’으로 인정하고 있다. 문제는 ‘독창성’의 높고 낮음을 판단할 기준이 명확하지 않고

43) 徐炎, “《著作权法》第三次修改草案第二稿评析”, 『知识产权』, 2013年 第7期, 第68页.

44) 李杨, 『著作权法基本原理』, 知识产权出版社, 2019年, 第179-120页; 오승중, 『저작권법』, 제4판, 박영사, 2016, 403-404면 참조.

45) 이러한 의견을 반영하여, 2012년 국가관권국 개정안과 2014년 법제판공실이 공개한 개정안에는 저작인접권으로 보호되는 ‘영상제품’을 삭제한 바 있다.

이로 인하여 중국 각지 법원의 판단이 상이한 경우가 많다는 점이다. 따라서 저작권접권의 대상인 ‘영상제품’을 삭제하는 것이 타당하다.

### 3. 수정권과 동일성유지권 관계

중국 저작권법상 저작인격권은 공표권, 서명권(성명표시권), 수정권, 동일성 유지권 총 4가지이다. 그중 수정권이란 “저작물을 수정하거나 타인에게 수정을 허락할 권리”<sup>46)</sup>를, 동일성유지권이란 “저작물에 대한 왜곡 및 무단변경(篡改)으로부터 보호받을 권리”<sup>47)</sup>를 말한다. 하지만 두 권리가 명확하게 구분되지 않고 한 권리의 두 가지 속성 즉 적극적인 속성과 소극적인 속성을 각각 보여 주기 때문에 하나로 통합해서 ‘동일성유지권’으로 하자는 견해가 많다.<sup>48)49)</sup> 또한 2012년 개정안과 2014년 개정안에도 두 권리를 하나로 합쳐서 동일성유지권으로 하고 그 의미를 “타인에게 저작물의 수정을 허락하거나 저작물의 왜곡 및 무단변경으로부터 보호받을 권리”라 정하고 있다. 하지만 2020년 개정안에는 이러한 내용이 반영되지 않았다. 문제는 사법실무에서 저작권 침해와 관련하여 ‘수정권’ 혹은 ‘동일성유지권’하나만 문제되는 경우가 없고, 원고 또한 이 두 권리의 침해를 동시에 주장하는 경우가 대다수이기 때문에 두 권리를 통합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것이 중국 내 다수 학자

46) 중국 저작권법 제9조 제1항 제3호.

47) 중국 저작권법 제9조 제1항 제4호.

48) 이에 관한 상세한 논의는 李琛, 论修改权, 知识产权, 2019年 第10期를 참조해 주기 바란다. 사실 중국은 이러한 논의를 반영하여 2012년 국가관권국의 개정안과 2014년 법제판공실이 공표한 개정안에서는 수정권을 삭제한 바 있다.

49) 국가관권국의 위탁으로 2012년 저작권법 개정 초안 작성을 담당했던 3곳(중국인민대학 지식재산권학원, 중남재경정법대학 지식재산권학원, 중국사회과학원 법학연구소) 중 하나인 사회과학원의 리밍더(李明德) 교수 연구팀은 “수정권은 동일성유지권의 하나의 내용에 불과하다”고 주장하며 ‘수정권’의 삭제를 강력하게 주장한 바 있다. 자세한 내용은 李明德, 管育鹰, 唐广良, 『《著作权法》专家建议稿说明』, 法律出版社, 2012年, 第20页를 참조해 주기 바란다. 또한 “2010년 저작권법에서 동일성유지권 이외에 수정권을 규정했는데, 이로 인하여 사법실무에서 혼란이 초래되고 있고, 반드시 이 두 권리를 하나로 통합시켜야 한다”는 견해도 존재한다. 자세한 내용은 李杨, 앞의 책, 176면을 참조해 주기 바란다.

들의 의견이고 이러한 견해가 타당하다.<sup>50)</sup>

이상의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하기 위해서는 다음 저작권법 개정을 기다릴 수밖에 없다. 하지만 사실상 법률과 동일한 효력을 가지는 최고인민법원의 '사법해석'의 제정 등을 통하여 이러한 문제점을 극복하기 위한 사법부의 노력이 선행되어야 할 것이다.

## V. 결론

이상 중국 저작권법 3차 개정의 경과, 개정된 주요 내용과 문제점 등을 살펴보았다. 이번 개정의 3가지 특징을 꼽으면 아래와 같다.

첫째, 징벌적 배상제도 도입, 법정배상액의 상한 조정, 법원의 침해 자료 제출 명령권, 저작권 행정관리부처의 집행 권한 강화 등 침해자에 대한 처벌이 대폭 강화되었다.

둘째, 시청각저작물이라는 개념의 도입으로 온라인 게임방송, 스포츠 경기 방송 등 다양한 영상저작물을 시청각저작물로서 보호할 수 있게 되었다.

셋째, 그동안 저작권법 실시조례, 저작권집중관리 조례 등 행정법규 및 국가관권국의 규장에 규정된 일부 내용을 저작권법으로 격상시킨 점도 특징이다. 하지만 이번 개정은 2012년 및 2014년 개정안과 큰 차이가 있고 그동안 문제된 많은 내용들을 반영하고 있지 못하다는 점을 이미 살펴본 바 있다. 하지만 중국법의 개정에 상당한 시간이 소요되며, 저작권법의 경우 거의 10년에 한번 정도 개정된 선례를 참조해 볼 때 당분간 저작권법 개정은 없을 것으로 예상된다.

과거 중국의 저작권침해소송에서 침해가 인정된 경우에도 배상금 확정이 쉽지 않았다. 권리자의 실제손실 또는 침해자의 위법수익 등을 증명하기가 매우 힘들기 때문이다. 따라서 법원이 법정배상을 적용하는 경우가 많았는

---

50) 蔡恒, 骆电, “我国《著作权法》第三次修改的若干问题思考”, 『法律适用』, 2017年 第1期, 第100页.

데, 중국의 현행법에 따르면 법정배상의 상한액이 50만 위안(한화 약 6천 8백만원)에 불과하기 때문에 제대로 된 배상을 받기 어려웠다. 하지만 개정 저작권법은 상한액을 500만 위안(한화 약 6억 8천만원)으로 상향 조정했기 때문에 향후 법정배상제도를 통하여도 충분한 배상을 받을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된다. 또한 징벌적 손해배상제도가 도입됨에 따라 중국 내 대규모의 조직적인 저작권 침해 현상도 대폭 감소할 것이며 징벌적 손해배상이 인정될 경우 우리 권리자가 손해배상액의 몇 배에 해당하는 추가적인 배상도 받을 가능성도 있다. 물론 징벌적 배상이 적용되기 위한 조건인 ‘고의’와 ‘엄중한 정황’의 요건에 대한 입증의 어려움 나아가 사실상 징벌적 성격을 가진 법정배상과의 관계처리 문제는 향후 좀 더 명확히 규정되어야 하고 중국 사법부의 판결 등을 지켜볼 필요가 있다.

2000년 초반 중국 등 중화권 국가에서 시작된 한류 열풍으로 인하여 한국 드라마, 예능 프로그램, 온라인 게임 등 한류 콘텐츠가 큰 인기를 얻고 있다. 제법 오랜 시간이 흐른 지금도 중국에서 한류 콘텐츠는 그야말로 초대박 콘텐츠로 시장성이 큰 상품으로 인정받고 있다. 문제는 이러한 한류 콘텐츠의 인기로 편승해서 판권을 정식 구매하지 않은 불법 콘텐츠가 여전히 온라인 상에 난무하고 있다는 점이다. 따라서 이를 바로잡기 위해서는 우리 정부의 노력도 필요하지만, 그보다 권리자가 중국에서 소송을 제기하는 등의 방식으로 좀 더 적극적인 대응에 나서야 한다. 다행히 최근 중국은 인터넷법원<sup>51)</sup> 등 온라인 재판제도를 도입해서 소송의 편의를 크게 제고시켰으며, 해외 권리자가 제기한 저작권침해소송에서 승소하는 경우가 갈수록 많아지고 있는데 이는 중국법원이 우리의 예상과 달리 공평무사하게 판단하고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sup>52)</sup> 물론 중국이 국내가 아닌 외국이라 소송 제기 등 침해 대응

51) 한국저작권위원회 홈페이지에서 저자가 작성한 “중국 인터넷법원 활용 핸드북”을 무료로 다운로드 받을 수 있다. 인터넷 주소는 다음과 같다. 손환기, “중국 인터넷법원 활용 핸드북”, 한국저작권위원회, <<https://www.copyright.or.kr/information-materials/publication/research-report/view.do?brdctsn=46233>>, 검색일: 2021년 3월 9일.

52) “중국에서 지재권을 등록해도 정상적인 보호를 받지 못할 것이라는 선입견이 여전히 남아 있으나, 현재 중국은 외자기업들이 보호받을 수 있는 환경으로 점차 변화되고 있

에 어려움이 있는 건 사실이지만, 한국저작권위원회 북경사무소 혹은 중국 주재 한국 외교공관을 통하면 무료 법률상담과 중국 내 침해 대응에 관한 컨설팅 등을 받아 볼 수도 있다.

이번 중국 저작권법 개정으로 인하여 우리 권리자들이 중국 내 저작권 침해에 대하여 적극 대응을 할 경우, (충분한) 배상을 받을 수 있음과 동시에 중국 내 침해자에게 경종을 울릴 수도 있다. 이를 통하여 중국 내 권리 침해를 예방하는 효과도 거둘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따라서 우리 문화체육관광부 등 관련 기관들은 우리 권리자들의 중국 내 침해 대응을 적극 지원하며, 관련 지원책과 제도를 마련 및 개선해 나가야 할 것이다.

---

다. 2018년에 외교전문 잡지 ‘더 디플로매트(The Diplomat)’는 중국에서 외국기업의 지적권 분쟁 승소율이 평균 80%에 달할 정도로 높다고 발표.” 한국무역협회, “중국 지식재산권 정책 동향 및 시사점”, 한국무역협회, 2019, 9면.

참고문헌

〈단행본(중국)〉

- 王迁, 『著作权法』, 中国人民大学出版社, 2015年.  
 李杨, 『著作权法基本原理』, 知识产权出版社, 2019年.  
 李明德, 管育鹰, 唐广良, 『《著作权法》专家建议稿说明』, 法律出版社, 2012年.

〈단행본(한국)〉

- 강광문 · 김영미, 『중국법 강의』, 박영사, 2017.  
 오승중, 『저작권법』, 제4판, 박영사, 2016.  
 오승중, 『저작권법 강의』, 제2판, 박영사, 2018.  
 이해완, 『저작권법』, 제2판, 박영사, 2012.  
 임원선, 『실무자를 위한 저작권법』, 제5판, 한국저작권위원회, 2017.

〈학술지(중국)〉

- 熊琦, “中国著作权法立法论与解释论”, 『知识产权』, 2019年 第4期.  
 熊琦, “中国著作权立法中的制度创新”, 『中国社会科学』, 2018年 第7期.  
 冯晓青, “中国70年知识产权制度回顾及理论思考”, 『社会科学战线』, 2019年 第6期.  
 吴汉东, “著作权法第三次修改草案的立法方案和内容安排”, 『知识产权』, 2012年 第5期.  
 张红斌 · 左玉茹, “著作权法(修订草案送审稿)评述”, 『交大法学』, 2015年 第1期.  
 阎晓宏, “《著作权法》第三次修改的几个问题”, 『知识产权』, 2012年 第5期.  
 徐炎, “《著作权法》第三次修改草案第二稿评析”, 『知识产权』, 2013年 第7期.  
 李振杰, “新中国成立70周年以来我国版权的立法回顾与制度展望”, 『编辑之友』, 2019年 第8期.  
 蔡恒 · 骆电, “我国《著作权法》第三次修改的若干问题思考”, 『法律适用』, 2017年 第1期.  
 李扬, 陈曦程, “论著作权惩罚性赔偿制度——兼评《民法典》知识产权惩罚性赔偿条款”, 『知识产权』, 2020年 第8期.  
 欧阳福生, “侵害知识产权惩罚性赔偿数额的确定——谈《民法典》第 1185 条适用的困境”, 『电子知识产权』, 2020年 第10期.

〈학술지(한국)〉

손한기, “중국식 위헌심사제도로서 헌법감독제도의 현황과 과제 — 위헌법률에 대한 통제가능성을 중심으로”, 『헌법재판연구』, 제3권 제2호(2016).

손한기, “중국에서 온라인 게임의 법적 보호 — 중국 저작권법을 통한 보호를 중심으로”, 『아주법학』, 제13권 제3호(2019).

이해완, “저작권의 귀속주체에 관한 중국 저작권법의 규정과 그 시사점”, 『성균과법학』, 제25권 제4호(2013).

〈기타자료〉

한국무역협회, “중국 지식재산권 정책 동향 및 시사점”, 한국무역협회, 2019.

国家版权局关于, 《中华人民共和国著作权法》(修改草案)公开征求意见的通知.

国家版权局关于, 《中华人民共和国著作权法》(修改草案第二稿)公开征求意见的通知.

国务院法制办公室关于公布, 《中华人民共和国著作权法(修订草案送审稿)》公开征求意见的通知.

关于, 《中华人民共和国著作权法修正案(草案)》的说明.

全国人民代表大会宪法和法律委员会关于, 《中华人民共和国著作权法修正案(草案)》修改情况的汇报.

全国人民代表大会宪法和法律委员会关于, 《中华人民共和国著作权法修正案(草案)》审议结果的报告.

〈판례〉

广东省高级人民法院民事判决书(2018) 奥民终137号.

上海市浦东新区人民法院民事判决书(2017) 沪0115民初88829号.

北京市高级人民法院(2020) 京民再128号.

## A Study on the Third Amendment of the Copyright Act in China

Son, Hanki

The third revision of China's Copyright Law was confirmed in November 2020 and will be implemented in June 2021. The main amendments are as follows. 1. Introduced a punitive damages system, and adjusted the statutory compensation limit to 5 million yuan, which greatly increased the punishment for copyright infringement. 2. Modified the regulations on examples of works and introduced the concept of audiovisual works. 3. Due to the expansion of broadcasting rights, wired broadcasting was also included in the broadcasting rights object. 4. Greatly improved the administrative power of copyright authorities and the investigation authority of the court. In addition, some contents and systems stipulated in the lower level law are elevated to the copyright law. Because of this amendment, large-scale organized copyright infringement will be reduced in China in the future, and full compensation will be given when the lawsuit is won. Therefore, Korean copyright owners need to be more active in dealing with copyright infringement in China.

Keyword

Chinese copyright law, third amendment, punitive damages, Statutory compensation, audiovisual works